

고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641 |
|----------|-----|

제출년월일 : 2000. 8. 24

제출자 : 고성군수

1. 개정사유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중 일정규모 미만인 시설을 소규모급수시설로 분류하여 관리함에 개정법령의 내용에 부합되게 고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개정하여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량 관리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한 정비계획수립(안 제3조)
- 나.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사항 의무화(안 제6조 및 제7조)
- 다. 간이급수시설의 재해 또는 사고시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과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수립(안 제9조 및 제10조)
- 라. 간이상수도 시설폐지 사유 발생시 협의회 의견 수렴하여 폐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마. 사용자로부터 간이상수도 요금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바. 간이상수도시설의 유지 및 운영·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3. 참고사항

근거법령 및 자료

0. 수도법 제32조제2항(간이상수도 관리등 - 조례위임)
0. 수도법 제38조의2(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관리 - 조례위임)
0. 수질58442-10940('99. 11. 22), 수질58442-10351(2000. 03.16)
 -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 표준안
0. 입법예고 - 특기할 사항 없음.

4. 본문 : 붙임과 같음

고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명 “고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고성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2조제2항 및 제3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간이급수시설”이라 한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간이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 ②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13의2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 ③관리자라 함은 간이상수도의 경우 간이상수도가 설치된 당해지역의 군수를,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시설단위별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 ④사용자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 ⑤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군수가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 2 장 시설의 관리 및 보수

제4조(시설의 관리) ①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간이급수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 ②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1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 주위에 올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검사) ①군수는 수도법 제19조 및 제38조의2와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결과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①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 결과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조치) ①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 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①군수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간이급수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개·보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간이급수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광역 상수도 공급가능구역에 위치한 지역의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관리자는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군수는 태풍, 홍수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간이급수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 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대비 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폐지) ①군수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간이급수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군수가 간이상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건강진단) 군수는 수도법 제20조 및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3 장 관 리 비 용

제13조(관리비용)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간이급수시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예산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요금징수) 관리자는 간이상수도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고성군수도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15조(계량기) ①관리자는 운영·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한다.

제 4 장 사용자 대표협의회

제16조(설치) ①간이급수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①협의회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대표자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중에서 선출한다.

③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④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간이급수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2. 간이급수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 이상 발견시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5.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회의개최)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사용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제20조(교육)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 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관리의 위탁) ①관리자는 간이상수도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간이급수시설 관리대장(제4조제2항관련)

| 관리번호 | | 시(군) 제 호 | | 내 역 | | | | | | |
|---------------|--------------|----------------|----------------------|---|-----------|------------|-----|-----------------|-----|--|
| 구분 | 항 목 | 도 시·군 읍·면 리 마을 | | | | | | | | |
| 일반 현황 | 위 치 | 성 명 | | 전화번호 | | () | | - | | |
| | 협의회대표자 | 준공년월일 | 년 월 일 | 최초사업자 | | | | | | |
| 투자 현황 (만원) | 총투자액 (만원) | 구 분 | 내 역 | 일 자 | 국 고 보 조 | 지 방 비 | | 주민부담 | 기 타 | |
| | | | | | 자재지원 협금지원 | 시도비 | 시군비 | | | |
| | | 최초사업비 | | | | | | | | |
| | | 시설개량 | | | | | | | | |
| | | 1차 | | | | | | | | |
| | | 2차 | | | | | | | | |
| | | 3차 | | | | | | | | |
| | | 수원이전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시설 현황 | 정수시설 | 수원의종류 | | 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 | | | | | | |
| | | 시설의유형 | | ① 자연유하식 ② 양 수 식 ③ 압 송 식 ④ 기 타 | | | | | | |
| | | 보유시설 | ① 집 수 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 | | | | | | | |
| | | 시설내역 | 구 분 | 제 원 | | 시 설 상 태 | | 특 기 사 항 | | |
| | | | | 양호 | 불량 | | | | | |
| | | | 집수정 1 | | | | | 심도 : | m | |
| | | | 집수정 2 | | | | | 심도 : | m | |
| | | | 양수모터1 | | | | | | 마력 | |
| | | 양수모터2 | | | | | | 마력 | | |
| | | 보유시설 | | ① 소독시설 ② 침 전 지 ③ 여 과 지 ④ 배 수 지 ⑤ 기 타 | | | | | | |
| 시설내역 | 구 분 | 제 원 | | 시 설 상 태 | | 특 기 사 항 | | | | |
| | | 양호 | 불량 | | | | | | | |
| | 소독설비 | | | | | | | | | |
| | 침 전 지 | | | | | | | | | |
| | 여 과 지 | | | | | | | | | |
| 배 수 지 | | | | | | | | | | |
| 송배수관로 | 구 분 | 송 수 관 로 | | | 배 수 관 로 | | | 관 종 별 총연장(m) | | |
| | | 관 종 | 직 경 | 연 장 | 관 종 | 직 경 | 연 장 | | | |
| | 소 계 | | mm | M | | mm | M | | | |
| | 소 계 | | mm | M | | mm | M | | | |
| | 소 계 | | mm | M | | mm | M | | | |
| 총 계 | | | M | | | | M | 총계 : M | | |
| 급수 현황 | 계 획 | 급수인구 : 명 | | 급수기구 : 가구 | | 1인당1일급수량 : | | 리터 | | |
| | 현 계 | 급수인구 : 명 | | 급수기구 : 가구 | | 1인당1일급수량 : | | 리터 | | |
| 제한 급수 | | 1차 : | | 2차 : | | 3차 : | | 계 : 일간 | | |
| 수질 | 검사 시설 | 취 수 원 | 배 수 지 | 수도꼭지 | 검사기관 | (개항목) | | | | |
| 검사 | 합격 여부 | | | | 검사일시 | | | | | |
| 개량 내역 | 개량 일자 | 개량시설명 | 소요액(만원) | 시 공 자 | 개 량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원 | 이전 사유 | | | | 이전일자 | | | 소요비용 | 만원 | |
| | 이전 위치 | | | | | | | | | |

* 시설폐지시는 뒷면에 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별지 제2호 서식]

간이급수시설 정기점검 대장(제7조제1항 관련)

| 관리번호 | 시(군) 제 호 | 점검일자 : . . . 점검자 : 소속 직 성명 | |
|----------------|-------------|-------------------------------|--------|
| 점 검 항 목 | | 점 검 결 과 | 조치 사 항 |
| ○취수원의 보호·관리상태 | | | |
| ○침전지의 운영·관리상태 | | | |
| ○여과지의 운영·관리상태 | | | |
| ○배수지의 운영·관리상태 | | | |
| ○관로관리 및 파손상태 | | | |
| ○소독시설의 운영·관리상태 | | | |
| 오염물 제거 | 취수원부근 | | |
| | 배수지부근 | | |
| 기 타 | | | |

* 매 3개월마다 실시한 수질검사결과 사본 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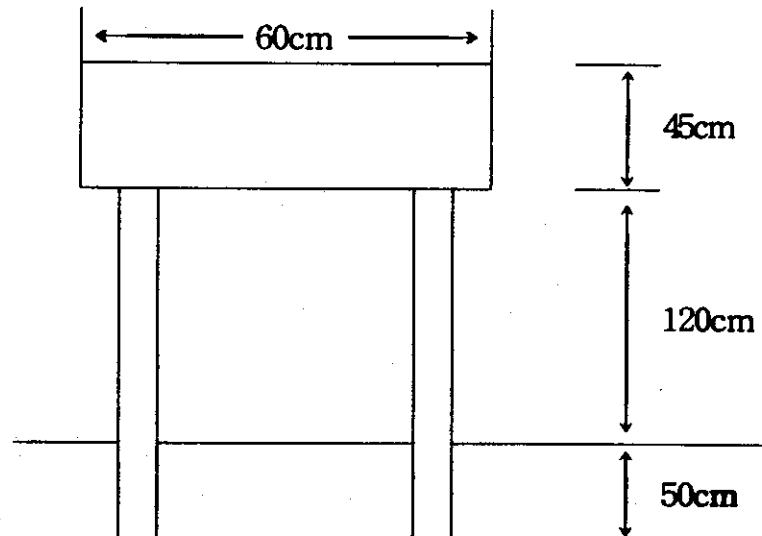
[별지 제3호 서식]

간이급수시설 수시점검 대장(제7조제1항 관련)

| 관리번호 | 시(군) 제 호 | 점검일자 : 점검자 : 소속 직 성명 |
|---|----------|-------------------------|
| ○ 소독시설 유무 및 가동상태 | | |
| ○ 수원으로부터 반경 20m이내에 세 균성 오염원(분뇨, 퇴비, 쓰레기장 등)의 유무 | | |
| ○ 수원으로부터 100m이내 유독성물 질(공장폐수 등)의 유무 | | |
| ○ 저수탱크의 누수유무 및 안전여부 | | |
| ○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유무 | | |
| ○ 외관(냄새, 색, 탁도)의 양호여부 | | |

<별표1> 간이급수시설 안내판 (제5조1항 관련)

간이급수시설 안내판



재질 및 두께 : 5mm내외의 스테인레스 재질

바탕색 : 흰색

글씨 : 청색

○ 내용문

알림

1. 이곳은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도(또는 소규모급수시설) 취수원입니다.
2. 이곳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 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번호 :

○ 위치 :

○ 시설용량 :

※ 수질오염 및 시설이상 발견시 연락처 : 고성군 ○○과(전화 :)